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85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복기왕・윤건영・이광희

이정문 • 이원택 • 민병덕

이연희 · 김현정 · 김선민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차가 보도로 침범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 피해 및 대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의 보도침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설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분리,"를 "분리,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차도와 보도의 <u>분리,</u> 고원식	3 <u>분리, 보도용</u>		
(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	<u>방호울타리의 설치,</u>		
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			
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			
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			
수 및 성능 개선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